
2025학년도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2024. 7.

유 초 등 교 육 과

2025학년도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 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하 “승진규정” 이라 한다)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이하 “인사관리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7.>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의 용어는 각 호의 정의로 한다.

1. ‘교원’ 이라 함은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를 말한다.
2. ‘원로교사’ 라 함은 교장의 임기를 마친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⑥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를 말한다. <개정 2018.8.14.>
3. ‘전직’ 이라 함은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교육전문직원에서 교원 으로의 임용을 말한다.
4. ‘정기전보 대상자’ 라 함은 현 소속 근무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9.8.22.>
5. ‘만료자’ 라 함은 현 소속 근무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9.8.22.>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광주광역시 관내 국·공립 초등학교, 공립 특수 학교(초등에 한함)에 근무하는 교원과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그 산하 교육 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초등 교육전문직원과 교원의 인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0.8.26.>

제4조(동·서부교육지원청 인사관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인사 법규 및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이하 “인사관리기준” 이라 한다)에 의하여 교육지원청의 공동 인사관리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신 규 임 용

제5조(신규임용 교감의 배치) 신규로 임용되는 교감은 가급적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배정하되, 다만, 학기 중에 신규로 임용할 경우와 정원 조정 등 교원 수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신규임용 수석교사의 배치) ① 삭제 <2019.8.22.>

- ②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 규모 등 학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 ③ 신규로 임용되는 수석교사는 가급적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동·서부 교육지원청에 배정한다. 다만, 학기 중에 신규로 임용할 경우와 정원 조정 등 교원 수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제②항 및 제③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원로교사의 배치) ① 교장의 임기를 마친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⑥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로의 임용을 원할 때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 ② 임용권자가 임용령 제9조의5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원로 교사의 근무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 ③ 이 외의 원로교사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원로교사 운영 계획’에 따른다. <신설 2023.7.17.>

제8조(신규임용 교사의 배치) ① 신규교사의 임용은 교사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 합격자로서 교사 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3조에 의하여 작성된 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한다.

- ② 신규로 임용되는 교사는 가급적 본인의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참작하고, 교육지원청 결원을 감안하여 배정하되,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해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자는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학기 중에 신규로 임용할 경우와 정원 조정 등 교원 수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7.>

- ③ 교육지원청에서는 배정된 신규교사가 동일 학교에 집중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

- ④ 특수학교(급) 신규교사의 임지 배치는 특수학교를 우선하여 고순위자순으로 하되,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 ⑤ 삭제 <2020.8.26.>

- ⑥ 신규교사 임용후보자명부는 공개한다.

제9조(사립학교 교사의 경력경쟁채용) 사립학교의 초등학교 교사는 본시의 교사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제10조(기간제교사의 임용) ①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학교장이 임용한다.

② 삭제 <2019.8.22.>

③ 기간제교사의 임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9.8.22.>

제 3 장 승진 임용

제11조(교원의 승진임용) ① 교원의 승진 임용(제청)은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②항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고순위자순으로 임용(제청)하되,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할 수 있다(단, 승진예정자의 40% 범위 내에서 제한 적용한다).

<개정 2018.8.14., 2023.7.17.>

1. 양성 중 어느 한 성이 30% 미만인 성에 해당되는 자
2. 승진후보자명부에 3회 이상 등재된 자
3. 각 해당 자격 선 취득자

②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 당해 연도 임용예정자의 명단은 해당 교원의 공개 요청이 있을 시 본인의 순위만 공개한다. <개정 2013.11.28.>

③ 승진예정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인 승진 예정자는 교원수급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 승진 임용(제청)에서 제외한다.

④ 특수학교 교장은 특수학교 교감 경력자를 우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12조(공모교장) ① 교장공모제 지정 학교의 교장 초빙임용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자는 당해 학교 임기가 만료되면 ‘교장공모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13조(교장의 중임) 1차 임기(4년)가 만료되는 교장은 관계법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중임 제청한다.

제14조(수석교사의 임용) ① 수석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②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①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7.18.>

② 수석교사 임용은 별도 선발계획에 의해 임용한다.

제15조(보직교사의 임용) 보직(부장)교사는 ‘초·특수학교(초등) 보직교사 배치 기준’에 의하여 학교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3.11.18., 2019.8.22. 2020.8.26.>

제 4 장 교원의 전보

제16조(교원의 전보 방침) ① 교원의 동일교, 동일 직위 근무 만료자 및 일반 희망자는 모두 전보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조항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개정 2017.8.17.>

② 교원의 전보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 또는 교육장의 내신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교장은 내신 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③ 삭제 <2013.11.28>

제17조(인사지역 및 근무연한) ①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의 인사지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공립 초등학교 전체를 단일 인사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8.8.14.>

② 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군을 조직하여 인사구역을 정한다.

③ 동일교 및 동일 직위 근무 기간은 1년 이상 4년 이하로 하되, 승진 가산점이 부여되는 농촌지역 학교의 근무 횟수는 1회에 한한다. 단, 2002.1.1. 이후의 근무경력부터 적용하되 학교 통합 및 이설로 인하여 만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는 1회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 시 분교(현 재직 본교 포함)와 본교(승격 학교)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4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1.28.>

④ 동일교 근무 만료자는 정기 전보일로부터 15일까지의 발령자를 포함한다.

⑤ 수석교사는 농촌지역 학교 또는 소규모학교 지역가산점 등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0.26.>

제18조(전보의 시기) 교장과 교감, 교육전문직원은 3월 1일자 또는 9월 1일자로, 수석교사, 교사는 3월 1일자를 정기전보로 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정기 전보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 직위 근속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9.8.22., 2020.8.26.>

제19조(교사의 전보) ① 교사의 전보는 교육장이 시행하되,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합의 하에 주관 교육지원청을 정하여 실시하고, 교육장이 합의한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②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인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보 업무를 추진하고, 시교육청은 이를 자문한다.

③ 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교사의 전보를 위한 서열 명부를 작성할 때, 현임교 근무 기간에 대한 경력점을 반영한다.

④ 교사의 서열 명부는 연령대별로 작성하되, 만기전보 희망자 중 특정 연령대가 집중된 학교는 별도 계획에 의해 전보한다. 단, 실습대용 학교와 12학급 이하 학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1.11.11., 2012.11.27.>

⑤ 휴직 기간과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파견된 기간은 당해 학교 근무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동점자 순위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직무 연수 이수 실적

2.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해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령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해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를 부양하는 자(부부교사는 1인에 한함) [단, 초등교사의 경우 당해 12.1.자 기준 일반학급 20학급 이상 학교 희망자에 한하며, 특수·비교과교사의 경우 거주지역 인사구역 내 학교 희망자에 한함] <개정 2017.8.17., 2020.8.26.>

3. 3세 미만의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교사(부부교사는 1인에 한함) 단, 거주지역 인사구역 내 학교 희망자에 한하며, 전입 예정교원[초빙(학교장 전입요청 포함)은 제외]의 25%범위 내(초등교사에 한함)에서 제한 적용 <개정 2012.11.27., 2013.11.28., 2018.8.14.>

4. 3명 이상의 자녀(단, 1명 이상이 12세 이하)를 부양하는 자(부부교사는 1인에 한함). 단, 거주지역 인사구역 내 학교 희망자에 한하며, 전입 예정교원[초빙(학교장 전입요청 포함)은 제외]의 25%범위 내(초등교사에 한함)에서 제한 적용 <개정 2015.8.28., 2016.8.29., 2018.8.14.>
 5.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현임교 근무기간에 학급 내 외국인 비율이 50% 이상의 학생을 2년 이상 지도한 담임교사[2024.3.1.이후 경력부터 적용] <신설 2023.7.17.>
 6. 현임교 근무 기간에 6학년 담임 경력 또는 체육 교과전담교사 경력 또는 부장 교사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3.11.28., 2016.8.29.> [체육 교과전담교사 경력은 2014.3.1.부터 2019.2.28.까지 경력에 한함] [부장교사 경력은 2018.3.1.부터 적용] [비교과교사 및 특수학교 교사의 경우 부장교사 경력만 인정] <개정 2017.8.17., 2018.8.14. 2020.8.26.>
 7. 교육 경력이 많은 자
 8. 삭제 <2016.8.29>
 9. 현임교 근무 기간 중 순회교사 다경력자
 10. 생년월일이 빠른 자
- ⑦ 폐교, 휴교 또는 학급 감축으로 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학교의 교사에 대한 전보는 폐교, 휴교 또는 학급감축 된 학교와 동일 인사구역 내 전입 희망 학교 결원의 30% 이내로 하되 전입희망 학교의 결원이 3명 이하일 경우는 1명 이내에서 전입할 수 있으며 동일 인사구역 외 전입을 희망할 경우는 만료자와 동일한 경력점(48점)을 부여한다. 다만, 분교의 본교 승격이나 비정기 전보시기의 인근 학교 신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개정 2013.11.28., 2014.11.28., 2015.8.28., 2016.8.29., 2019.8.22.>

- ⑧ 현임교 근무 만료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원하는 전입희망 학교에 각각 1인 이내로 연령대별 배치기준 내에서 우선 전보한다. 경합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 순서로 배치한다[단, 제4호의 경우 우선 전보 대상 학교에서 농촌소규모학교¹⁾를 제외한다].

<개정 2013.11.28., 2022.7.28.>

1. 삭제
2.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교사(2012.3.1.자 인사부터 1회에 한함) <개정 2010.11.30.>
4. 현임교 재직 중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학생야영장, 영어센터, 발명 교육센터에 2년 이상 특수 목적으로 (파견)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사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⑪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요구한 교사
6.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해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교사 [단, 초등교사의 경우 당해 12.1.자 기준 일반학급 20학급 이상 학교 희망자에 한하며, 특수, 비교과교사의 경우 거주지역 인사구역 내 학교 희망자에 한함] <신설 2023.7.17.>

1)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가산점 평정기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20-228호(2020.8.28.)] 제3조(선택가산점) 제5호의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농촌교육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학교(단, 광주북초등학교는 제외)

- ⑨ 학교장은 정기전보 대상자 중 해당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연수·연구 실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교사에 한하여 전입자의 10% 이내에서 전입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초빙교사를 포함하여 교사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영어센터 운영학교의 경우, 영어센터에 근무하는 총 교사 수의 1/3 이내에서 전입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2024.7.18.>
- ⑩ 교육장은 주당 수업 시간 수가 적은 교과전담교사,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2개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지도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에 의거 순회 교사를 임명·활용할 수 있다.
- ⑪ 교육장은 학생 수가 적은 무의촌 소규모 학교를 순회하면서 지도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에 의하여 보건순회교사를 임명·활용할 수 있다.
- ⑫ 삭제 <2023.7.17.>
- ⑬ 타시·도에서 전입한 교원, 국립학교에서 전입한 교원, 사립학교에서 경력경쟁채용된 교원은 관내 교원 전보 후 결원이 있는 학교에 배치하되 전입 교원의 일정비율을 넘지 아니한다. 단, 정원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신설 2023.7.17.>

제19조의2(특수학교 교사의 전보) ① 특수학교 교사의 전보는 동 기준 제18조와 19조에 의하여 실시하되, 특수학교(급) 교사로 8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자 중 총 근무기간에서 특수학급(교) 교사로 4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없는 자는 다음 순위로 특수학급(교)으로 우선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배정하되, 경합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 순서로 배치한다. 다만, 특수학교 우선 전보는 해당 특수학교 전입 예정 정원의 40% 이내로 하되 전입 예정 정원이 2명 이하일 경우 1명 이내에서 전입할 수 있으며, 교사 수급 실정 및 학교 신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11.28., 2022.7.28.>

1. 특수학급(교) 근무경력이 적은 자
2. 특수교육 경력이 많은 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 ② 특수학교의 장은 중도·중복 장애아동의 순회 또는 재택 지도를 위하여 순회교사를 임명·활용할 수 있다.
-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전입 희망학교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2.11.27., 개정 2021.8.24.>
- ④ 청각장애학생 지도에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교장의 부신서를 첨부하여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3.11.28.>
- ⑤ 현임교의 직전임 특수학교로는 **인사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7.28., 개정 2024.7.18.>
- ⑥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지침’ 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28.>

제19조의3 삭제 <2020.8.26.>

제19조의4(보건교사의 전보) ① 보건교사의 전보는 동 기준 제18조와 제19조에 의하여 실시하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지침’ 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8.>

② 삭제 <2013.11.28.>

제19조의5(사서교사의 전보) 사서교사의 전보는 동 기준 제18조와 제19조에 의하여 실시하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지침’ 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8.>

제19조의6(재활복지교사의 전보) 삭제 <2013.11.28>

제19조의7(영양교사의 전보) 영양교사의 전보는 동 기준 제18조와 제19조에 의하여 실시하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 지침’ 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8.>

제19조의8(전문상담교사의 전보) 전문상담교사의 전보는 동 기준 제18조와 제19조에 의하여 실시하되, 교육(지원)청 순회교사로 2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전입희망 학교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지침’ 으로 정한다.

<개정 2020.8.26.>

제20조(국·공립간 교원 전보) ① 국립학교에서 전입하는 자는 국립 학교장의 내신을 참작하여 타·시·도 전입자와 동일한 인사기준에 의해 전보한다.

②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교육감으로부터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아 국립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③ 국립학교 근무 당시 상급자격(교감)을 취득한 자의 공립학교로의 전입은 근속 만기 후 2년간 제한하되, 자격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 취득 후 1년 이후로 제한한다. <개정 2020.8.26.>

④ 국립학교 근무 당시 상급자격(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을 받은 자는 공립학교로의 전입을 근속 만기(4년) 이후로 제한한다. [2020.3.1.자 이후 전출자부터 적용] <신설 2019.8.22.>

제21조(시·도간 전보) ① 타시·도간 교원 교류는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교원 수급 상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17.>

② 타시·도간 교원 교류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하여 교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8.17.>

1순위 : 전출 희망 시·도에 배우자가 거주하는 부부간 별거자

2순위 : 부양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직계 존·비속(1대)과 별거 하는 자, 유공자로서 부양해야 할 직계 존·비속(1대)과 별거하는 자(위 대상자의 주소지로 전출 희망한 자에 한함),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해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교사 <개정 2019.8.22., 2023.7.17.>

※ 유공자의 범위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5·18 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3순위 : 일반 희망자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순위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에 의한다.

1. 제21조제②항에 해당되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 5조 해당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개정 2019.8.22.>
2. 최근 5년 동안 동일 순위 내 동일 시·도 전출 희망 신청 횟수가 많은 자(1, 2순위의 신청횟수는 별거 후 신청 횟수임)
3.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 <신설 2018.8.14.>
4. 해당 순위에서 별거 기간이 많은 자
5. 본인(배우자)의 65세 이상 노부모 봉양 자(전출 희망 시·도에 5년 이상 거주)
6. 3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자
7. 우리 시 근속 경력이 많은 자
8. 교육경력이 많은 자
9.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제22조(교장의 전보) ① 교장의 전보는 현임교 근무 연한과 교장 경력, 학교 경영 역량, 청렴성, 학부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11.28., 2015.8.28.>

- ②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인 자와 중임 만료 잔여기간 6개월 이내인 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24.>
- ③ 초빙 교장제 또는 교장 초빙·공모제,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별도의 규정에 의거 임용한다.
- ④ 삭제 <2019.8.22.>

제23조(교감의 전보) ① 교감의 전보는 현임교 근무 연한과 교감 경력, 학교 경영지원 역량, 청렴성, 학부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11.28., 2015.8.28.>

- ②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인 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

제24조(수석교사의 전보) 수석교사의 전보는 근무 연한과 업무 평가, 컨설팅 장학 활동 실적, 청렴성, 학부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11.28.>

제25조(전보유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교사(수석교사 포함)
<개정 2016.8.29., 2021.8.24.>
2. 현임교 근무 만료자로서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동계대회, 전국장애 학생체육대회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하여 3위 이상의 입상 실적을 거양한 교사로서 다음 연도 시 대표팀 선수 지도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8.8.14.>
3. 현임교 재직 중 전국과학전람회 등에서 특상 이상에 입상한 교사 및 입상 학생을 직접 지도한 교사가 다음 연도에 계속 작품을 제작하거나 직접 학생 지도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

4. 국립학교 근무 만료자로서 교육실습의 내실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5. 시교육청 지정 초등학교 ‘키움 영재학급’ 담당 교사 또는 차년도 업무 예정자 중 1인 <개정 2013.11.28., 2018.8.14., 2019.8.22.>
6. 전보일 기준 출산휴가 중이거나 출산 예정일이 3개월 이내인 여교사 중 희망한 자
7. 영어 교과전담교사로 배치된 교사 중 의무복무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1.11.11.>
8. 혁신학교(예비혁신학교 포함) 및 차년도 혁신학교(예비혁신학교 포함)의 교사 중 당해 학교 교사 총 정원의 10% 범위 이내에서 혁신학교 내실화에 필요하다고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인정한 자 <신설 2011.11.11., 개정 2014.11.28., 2016.8.29., 2018.8.14., 2020.8.26., 2021.8.24., 2023.7.17.>
9. 삭제 <2015.8.28.>
10. 시교육청 지정 한국어학급 담임교사 중 다문화교육 내실화에 필요하다고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인정한 자 <신설 2017.8.17., 개정 2019.8.22., 2023.7.17.>
11. 혁신학교(예비혁신학교 포함) 및 차년도 혁신학교(예비혁신학교 포함)의 교장, 교감 중 혁신학교 내실화에 필요하다고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인정한 자 <신설 2018.8.14.>
1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 하는 자 <신설 2019.8.22.>

제26조(비정기 전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거나, 학교장의 전보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근속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1.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감사 결과 인사조치 지시를 받은 자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 처분 받은 자
5.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저조한 자
6.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제①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7. 교권침해 등으로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전보가 불가피한 자(단,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함)
<신설 2013.11.28.>
8.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동일교에 근무하게 된 경우
<신설 2013.11.28., 개정 2015.8.28., 2016.8.29.>
 - 가. 부부
 -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다. 본인의 형제자매
9. 제19조제⑥항제3호, 제4호의 거주지 사실 허위자 <신설 2016.8.29., 개정 2018.8.14.>

제27조(초빙교사) 초빙교사의 임용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1. 교장이 초빙교사를 임용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교사 초빙은 만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초빙교사의 당해학교 근무 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22.7.28.>

3. 초빙교사 비율은 당해 학교 교사 총 정원의 10% 이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학교는 50% 이내)로 하되, 당해 학년도 초빙 비율은 전입교사 총 정원의 50% 이내로 한다. 단,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는 운영지침에 의한다. <개정 2012.11.27., 2016.8.29., 2022.7.28.>
4. 이 외 교사의 초빙 임용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초빙교사 임용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다.

제 5 장 교육전문직원 임용

제28조(교육전문직원 신규임용) 교육전문직원은 본시 소재 국·공립학교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임용한다.

- ①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최초 전직임용은 초등교육분야, 특수교육분야, 유아교육분야 등 별도의 계획에 의해 공개 채용하여 임용한다.

<개정 2020.8.26.>

- ② 교육전문직원의 전직 및 승진 임용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가. 관내 초등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의 해당자 중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를 충족하는 자 <개정 2023.7.17.>

나. 장학사·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 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 속하는 자

다. 삭제 <2023.7.17.>

2. 장학사·교육연구사

가. 관내 초등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의 해당자 중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를 충족하는 자 <개정 2023.7.17.>

나.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정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자

제29조(교육전문직원의 전보)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현임 기관의 동일 직위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4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한다. 다만, 인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예할 수 있다.

제30조(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①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최초 전직 임용은 그가 소속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별도의 계획에 따라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임용한다. 또한 교육전문직원을 거치지 않은 교원을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전직 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선발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1.27., 2017.8.17., 2020.8.26., [2024.7.18.](#)>

② 교장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교사를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 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직 임용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이수시켜야 한다.

④ 교육전문직원이 교원 등으로 전직하여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전문직으로 재전직할 수 있다. 다만 시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의 재전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22.>

제31조(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①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전직은 동일 직위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동일한 임용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6년 이상 근속한 자는 교원으로 전직한다. 다만, 인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예할 수 있다.

②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전직은 동일 직위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장학사와 교육연구사의 합산 경력이 8년 이상인 자는 교원으로 전직한다. 다만, 인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③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으로 현직위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 또는 전직한다. 다만, 인사 상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④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교(원)장 또는 교(원)감으로 전직하되 인사 상 부득이한 경우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2.11.27.>

1. 교사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여 교(원)감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이 20년 이상이 되는 자는 교(원)감으로 전직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2. 교사(교감자격증 소지자 포함)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여 교(원)장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교감으로 전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1.28.>

3. 교(원)감 경력이 있는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장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교(원)장으로 전직할 수 있다.

- ⑤ 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⑥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연구(장학)사·연구(장학)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시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1.27., 개정 2013.11.28., 2019.8.22.>

제 6 장 보 칙

제32조(교육지원청 관내 인사) ① 교육장은 이 기준에 준하여 동·서부교육지원청의 단일 인사관리기준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의 인사관리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도록 한다.

1. 교사의 전보는 희망 학교와 희망 인사구역을 감안하여 시행한다.
2. 학교별 교사 배치는 남녀별, 경력별 비율을 고려한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3. 신규임용 교사는 인사구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한다.

③ 교사의 전보내신은 학교별 교사 정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만료자가 교사 정원의 50%를 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17.>

제33조(특수사항 인사)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사 기준에 의한다. 이때,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4조(기간) 이 기준에서 기간을 정할 때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1년으로 보지 아니 한다.

부 칙 (1996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96년 3월 1일자로 동일교 근무 만료자가 재직 교사의 60%를 초과 할 경우에는 제10조제③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년 만료자 중에서 그 초과인원에 대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부 칙 (1997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1997년 3월 1일자에 시행하는 교사(교감) 전보의 경우 동·서부 교육청 개청 이후 근속경력 9년인 자를 교류 대상 인원으로 할 때, 그 수가 과다하므로 동·서부교육청 개청 이후 동일 지역 근속경력을 합산하여 매년 적정 인원을 조정,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1997. 3. 1. : 17년 이상 근속자
 - 1998. 3. 1. : 16년 이상 근속자
 - 1999. 3. 1. : 14년 이상 근속자
 - 2000. 3. 1. : 13년 이상 근속자
 - 2001. 3. 1. : 12년 이상 근속자

부 칙 (1998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98년 3월 1일자에 시행하는 교사(교감) 전보의 경우 동·서부 교육청 개청 이후 근속경력 10년인 자를 교류 대상 인원으로 할 때 그 수가 과다하므로 동·서부교육청 개청 이후 동일 지역 근속 경력을 합산하여 매년 적정 인원을 조정,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1998. 3. 1. : 16년 이상 근속자
 - 1999. 3. 1. : 15년 이상 근속자
 - 2000. 3. 1. : 14년 이상 근속자
 - 2001. 3. 1. : 13년 이상 근속자
 - 2002. 3. 1. : 12년 이상 근속자

부 칙 (1999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전문직의 인사는 시교육청 직제 개편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원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3. 2000학년도 교원 인사는 동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2001학년도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 교육청이라 지칭한다.

부 칙 (2001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3. 2000학년도 교원(교감, 교사) 인사는 동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2001학년도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 교육청이라 지칭한다.
4. 2001년 9월 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하되, 결원된 학교의 교사 충원을 위하여 신규교사를 우선 배치한 후 전보한다.

부 칙 (2002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3. 2001학년도 교원(교감, 교사) 인사는 서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2002학년도 교원 인사는 동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 교육청이라 지칭한다.
4. 2002년 9월 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하되, 결원된 학교의 교사 충원을 위하여 신규교사를 우선 배치한 후 전보한다.

부 칙 (2003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3. 2003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 교육청이라 지칭한다.
4. 2003년 9월 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하되, 결원된 학교의 교사 충원을 위하여 신규교사를 우선 배치한 후 전보한다.

부 칙 (2004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3. 2004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동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 교육청이라 지칭한다.
4. 2004년 9월 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05학년도)

1. (시행일)이 기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3. 2005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 교육청이라 지칭한다.

4. 2005년 9월 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06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③항의 동점자 순위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6조제③항의 동점자 순위 규정은 2006학년도 인사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4. 2006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동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 교육청이라 지칭한다.

5. 2006년 9월 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07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4조제⑤항의 동점자 순위 규정과 제14조제⑦항제3호, 제16조제②항, 제16조제③항의 동점자 순위 규정, 제19조제①항제6호의

규정은 2007학년도 인사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4. 2007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교육청이라 지칭한다.
5. 2007년 9월 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08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4조제④항, 제14조제⑥항제3호, 제20조제①항의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4. 2008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동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교육청이라 지칭한다.
5. 2008년 9월 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09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4조제⑥항, 제16조제③항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단, 제14조제⑥항제3호의 단서 조항은 2009.3.1. 시행)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4. 2009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교육청이라 지칭한다.
5. 2009년 9월 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10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4조제⑥항제4호, 제14조제⑥항제5호, 제14조제⑧항제4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4. 2010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동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교육청이라 지칭한다.
5. 2010년 9월 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11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6조제①항제1·제2호의 우선 임용 규정과 제14조제⑥항의 동점자 순위 규정, 제14조제⑧항제1·제2·제3호의 규정, 제15조제①항 규정은 2011학년도 인사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4. 2011학년도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지원청을 주관교육지원청이라 지칭한다.
5. 2011년 9월 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12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3. 2012학년도 교원 인사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지원청을 주관교육지원청이라 지칭한다.
4. 2012년 9월 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13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가능 근무기간 및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제한 횟수 적용례)제31조제④항과 제⑥항은 2011.11.23. 이후 교육전문직원으로 신규 임용된 교육공무원과 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으로 승진 임용된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단, 교육공무원인사관리 규정(훈령 제229호,2011.11.23.) 시행 전에 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로 기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제31조제④항을 적용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4. 2013학년도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지원청을 주관교육지원청이라 지칭한다.
5. 2013년 9월 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14학년도)

1. (시행일) 이 원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3. (경과조치) 제19조제⑥항제5호 중 체육 교과전담교사 경력 부분과 제22조제④항은 2015.3.1.부터 적용한다.
4. 2014학년도 교원 인사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지원청을 주관교육지원청이라 지칭한다.

부 칙 (2015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3. 2015학년도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지원청을 주관교육지원청이라 지칭한다.

부 칙 (2016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3. 2016학년도 교원 인사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지원청을 주관교육지원청이라 지칭한다.

부 칙 (2017학년도)

1. (시행일) 이 원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3. 2017학년도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지원청을 주관교육지원청이라 지칭한다.

부 칙 (2018학년도)

1. (시행일) 이 원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3. 2018학년도 교원 인사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지원청을 주관교육지원청이라 지칭한다.

부 칙(2019학년도)

1. (시행일) 이 원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3. 2019학년도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지원청을 주관교육지원청이라 지칭한다.

부 칙 (2020학년도)

1. (시행일) 이 원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3. 2020학년도 초등 교원 인사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지원청을 주관교육지원청이라 지칭한다.
4. 2020학년도 유치원 교원 및 특수학교 초등 교원 인사는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부 칙 (2021학년도)

1. (시행일) 이 원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3. 2021학년도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지원청을 주관교육지원청이라 지칭한다.
4. 2021학년도 특수학교 초등 교원 인사는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부 칙 (2022학년도)

1. (시행일) 이 원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3. 2022학년도부터 초등 교원 인사는 짝수년은 동부교육지원청, 홀수년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지원청을 주관교육지원청이라 지칭한다.
4. 2022학년도 특수학교 초등 교원인사는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5.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교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19조의2 3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2.2.28.자 이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입한 교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23학년도)

1. (시행일) 이 원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3. (경과조치) 제19조제⑧항 연령대별 배치기준은 2025.1.1.자 연령을 기준으로 2025.3.1.부터 적용하며, 제19조제⑧항제4호는 2024.3.1.부터 적용하되 2022.8.31.자 이전 (과건)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의2제①항과 제⑤항은 2024.3.1.부터 적용한다.
4. 2023학년도 특수학교 초등 교원인사는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부 칙 (2024학년도)

1. (시행일) 이 원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3. 2024학년도 특수학교 초등 교원인사는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부 칙 (2025학년도)

1. (시행일) 이 원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3. 2025학년도 특수학교 초등 교원인사는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